한화 포레나 인천연수 입주자모집공고문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견본주택(http://hanwha.forena.co.kr/yeonsu)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견본주택 관람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관람 여부는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접수는 견본주택 방문**(드라이브 스루) 및 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견본주택 내부 관람은 불가**합니다.
 - 서류접수 일정 : 2021년 2월 1일(월) ~ 2021년 2월 7일(일) / 10:00 ~ 17:00

 ※서류 미접수시 계약포기로 간주됨.
 - 당첨자 자격검증 제출서류는 홈페이지상에 공지예정이며, 서류 확인 중 미비서류가 있을 시 개별로 별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우편으로 서류 접수를 하실 경우 우편물 발송 시 **빠른등기로 접수를 하셔야 하며 우편 서류 접수는 2021년 2월 5일(금) 도착분**까지에 한합니다.(등기영수증은 보관 바랍니다)

 ※견본주택 방문(드라이브 스루) 서류 접수는 2021년 2월 7일(일) 17:00시까지 가능합니다.
 - 공급계약은 해당 날짜별 정해진 동별/라인별에 따라 계약이 가능합니다.
 - 계약 시 당첨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동행 불가/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가능)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일정,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일정·방법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4.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 1644-9099) 및 청약홈 청약콜센터(☎ 1644-7445)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 당첨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일정 안내

1. 당첨자(예비당첨자) 서류 접수 방법 및 일정

서류 접수 일정		2/1(월) ~ 2/7(일) / 10:00 ~ 17:00
접수 방법	견본주택 방문	**드라이브 스루**(차량 또는 도보로 방문하여 지참하신 서류 제출 후 귀가)
	빠른 등기 우편 접수	보내실 곳**(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0-1번지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 견본주택)**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확인 중 미비서류가 있을 시 개별로 별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우편 접수는 2021년 2월 5일(금) 도착분까지에 한합니다.

2. 정당계약 일정

구분	2/15(월)	2/16(화)	2/17(수)	2/18(목)	2/19(금)	2/20(토)	2/21(일)
대상	101동, 102동(1,2호 라인)	102동(3,4호 라인), 103동(1,2,3호 라인)	103동(4호 라인), 104동	105동, 106동(1호 라인)	106동(2,3,4호 라인), 107동(1,2호 라인)	107동(3,4호 라인), 108동(1,2,3호 라인)	108동(4호 라인), 109동

※ 상기 일정 및 대상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8.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시 연수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 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특별공급으로 선정된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 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8.)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시 2년 이상(2019.1.8.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인천시는 물론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인천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인천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신청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인천시 2년 미만 거주 신청자의 경우 1순위 기타 청약일에 청약접수를 하여야함)

-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구분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인천시 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8.)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됨(주택형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

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청약접수, 이중당첨 관련 유의사항

- 당첨자발표일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중복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이중당첨 또는 재당첨제한으로 모두 무효처리됨. 단,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개편으로 당첨자 발표일 일원화로 동일단지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한 자가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공급유형을 달리한 신청(특별공급+일반공급)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나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제외)처리함. 또한, 특별공급을 신청한 자의 세대구성원[세대주인 배우자 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세대주)]이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갖추어 공급유형을 달리한 신청[신청자(특별공급)+배우자(일반공급)]으로 모두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하나 일반공급 당첨(배우자)은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됨.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 인정함.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당첨취소 처리 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1순위, 2순위 당첨 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hanwha.forena.co.kr/yeonsu)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퍼센트(%)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퍼센트(%)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퍼센트(%)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퍼센트(%)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인천시 연수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모든 주택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는 인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표기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계 법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인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th><th colspan="2">일반1순위</th><th rowspan="2">일반2순위</th><th rowspan="2">당첨자발표</th><th rowspan="2">서류접수</th><th rowspan="2">계약체결</th></tr>
<tr><th>해당지역
(인천시 2년 이상 거주자)</th><th>기타지역
(인천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th></tr>
<tr><td>일정</td><td>2021.1.18.(월)</td><td>2021.1.19.(화)</td><td>2021.1.20.(수)</td><td>2021.1.21.(목)</td><td>2021.1.27.(수)</td><td>2021.2.1.(월)
~ 2021.2.7.(일)</td><td>2021.2.15.(월)
~ 2021.2.21.(일)</td></tr>
<tr><td>방법</td><td>인터넷 청약
(08:00 ~ 17:30)</td><td colspan="3">인터넷 청약
(08:00 ~ 17:30)</td><td>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td><td>빠른 등기 우편 접수 /
드라이브 스루</td><td>견본주택 방문 계약
(10:00 ~ 17:00)</td></tr>
<tr><td>장소</td><td>▪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td><td colspan="3">▪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
- 은행창구(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td><td>▪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td><td colspan="2">▪ 당사 견본주택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40-1번지
* 서류접수 시 견본주택 관람 불가
* 당첨자 외 입장 불가</td></tr>
</table>

※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특별공급 신청을 견본주택에서 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표번호(☎ 1644-9099)로 방문 예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9.29.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시 연수구 도시주택과 - 858호(2021.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51-3외 20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3~23층 9개동 총 76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378세대(일반[기관추천] 76세대, 다자녀가구 76세대, 신혼부부 151세대, 노부모부양 22세대, 생애최초 5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0001394	01	084.8512A	84A	84.8512	26.4781	111.3293	40.9929	152.3223	44.1492	195	20	20	38	6	14	98	97	9
		02	084.9988B	84B	84.9988	25.7952	110.7940	41.0643	151.8582	44.2260	281	28	28	56	8	20	140	141	13
		03	084.9227C	84C	84.9227	25.3364	110.2591	41.0276	151.2866	44.1864	107	10	10	21	3	7	51	56	5
		04	084.7127D	84D	84.7127	25.8600	110.5727	40.9260	151.4988	44.0771	184	18	18	36	5	12	89	95	9
	합 계										767	76	76	151	22	53	378	389	36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세대)

타입	공급 세대수	층별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분양대금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계약 시	계약 후 1개월	2021.05.14.	2021.10.15.	2022.02.14.	2022.07.15.	2022.11.15.	2023.03.15.	
84A	195	1층	7	162,396,000	288,704,000	451,100,000	10,000,000	35,110,000	45,110,000	45,110,000	45,110,000	45,110,000	45,110,000	45,110,000	135,330,000
		2층	9	164,124,000	291,776,000	455,900,000	10,000,000	35,590,000	45,590,000	45,590,000	45,590,000	45,590,000	45,590,000	45,590,000	136,770,000
		3층	9	165,852,000	294,848,000	460,700,000	10,000,000	36,070,000	46,070,000	46,070,000	46,070,000	46,070,000	46,070,000	46,070,000	138,210,000
		4~10층	63	168,120,000	298,880,000	467,000,000	10,000,000	3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140,100,000
		11~18층	70	171,576,000	305,024,000	476,600,000	10,000,000	37,660,000	47,660,000	47,660,000	47,660,000	47,660,000	47,660,000	47,660,000	142,980,000
		19~23층	37	173,124,000	307,776,000	480,900,000	10,000,000	38,090,000	48,090,000	48,090,000	48,090,000	48,090,000	48,090,000	48,090,000	144,270,000
84B	281	1층	9	163,800,000	291,200,000	455,000,000	10,000,000	3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136,500,000
		2층	13	165,564,000	294,336,000	459,900,000	10,000,000	35,990,000	45,990,000	45,990,000	45,990,000	45,990,000	45,990,000	45,990,000	137,970,000
		3층	13	167,328,000	297,472,000	464,800,000	10,000,000	36,480,000	46,480,000	46,480,000	46,480,000	46,480,000	46,480,000	46,480,000	139,440,000
		4~10층	91	169,596,000	301,504,000	471,100,000	10,000,000	37,110,000	47,110,000	47,110,000	47,110,000	47,110,000	47,110,000	47,110,000	141,330,000
		11~18층	101	173,088,000	307,712,000	480,800,000	10,000,000	38,080,000	48,080,000	48,080,000	48,080,000	48,080,000	48,080,000	48,080,000	144,240,000
		19~23층	54	174,636,000	310,464,000	485,100,000	10,000,000	38,510,000	48,510,000	48,510,000	48,510,000	48,510,000	48,510,000	48,510,000	145,530,000
84C	107	2층	5	160,560,000	285,440,000	446,000,000	10,000,000	3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133,800,000
		3층	5	162,252,000	288,448,000	450,700,000	10,000,000	35,070,000	45,070,000	45,070,000	45,070,000	45,070,000	45,070,000	45,070,000	135,210,000
		4~10층	35	164,448,000	292,352,000	456,800,000	10,000,000	35,680,000	45,680,000	45,680,000	45,680,000	45,680,000	45,680,000	45,680,000	137,040,000
		11~18층	40	167,868,000	298,432,000	466,300,000	10,000,000	36,630,000	46,630,000	46,630,000	46,630,000	46,630,000	46,630,000	46,630,000	139,890,000
		19~23층	22	169,380,000	301,120,000	470,500,000	10,000,000	37,050,000	47,050,000	47,050,000	47,050,000	47,050,000	47,050,000	47,050,000	141,150,000

84D	184	1층	2	160,308,000	284,992,000	445,300,000	10,000,000	3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133,590,000	
		2층	9	162,000,000	288,000,000	450,000,000	10,000,000	3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135,000,000	
		3층	9	163,728,000	291,072,000	454,800,000	10,000,000	35,480,000	45,480,000	45,480,000	45,480,000	45,480,000	45,480,000	45,480,000	136,440,000	
		4~10층	63	165,960,000	295,040,000	461,000,000	10,000,000	3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138,300,000	
		11~18층	67	169,380,000	301,120,000	470,500,000	10,000,000	37,050,000	47,050,000	47,050,000	47,050,000	47,050,000	47,050,000	47,050,000	141,150,000	
		19~23층	34	170,892,000	303,808,000	474,700,000	10,000,000	37,470,000	47,470,000	47,470,000	47,470,000	47,470,000	47,470,000	47,470,000	142,410,000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하는 주택으로 분양가격의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20%는 자납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단,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층별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한 금액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포함)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공사 및 추가 선택 옵션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 옵션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방식(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으로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등기시 확정측량 등에 의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지분이 확정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임.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저층 주택배정 세대는 1층에 필로티 등으로 일반분양 세대가 없는 경우 공급세대 중 그 위층을 최하층으로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현황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A	84B	84C	84D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3	4	2	2	11
	장기복무 제대군인		2	2	1	2	7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4	1	2	10
	중소기업 근로자		2	5	2	3	12
	장애인	인천광역시	5	6	2	4	17
		서울특별시	3	4	1	2	10
		경기도	2	3	1	3	9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50%)		10	14	5	9	38
	인천광역시 2년 미만,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50%)		10	14	5	9	38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29	42	16	27	114
		일반공급(25%)	9	14	5	9	3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6	8	3	5	22
생애최초 특별공급	—		14	20	7	12	53
합 계			98	140	51	89	37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및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td><td>•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td></tr>
<tr><td>청약자격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분</th><th>인천광역시</th><th>서울특별시</th><th>경기도</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50만원</td><td>30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400만원</td><td>6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700만원</td><td>1,0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000만원</td><td>1,5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td></tr>
</table>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노부모 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 적용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2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이후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ㅁ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존 주택 소유로 봄.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 대상자는 각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함.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가 견본주택에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 처리 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첨 검수일(계약체결 전 서류접수) 또는 계약체결 전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견본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하는 경우(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청약 시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76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 장애인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6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에 대상 세대수의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함)에게 "다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인천・서울・경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5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0.2.20.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 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이하 “직인날인” 서류 동일 적용)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근로계약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견본주택 비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 견본주택 - 세무서 또는 홈택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1호(2020.09.29.)]에 따릅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2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2항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53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한다)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3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0.2.20.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130% 이하	7,221,478원	8,094,245원	9,019,860원	9,872,308원	10,724,756원	11,577,203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130%}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 증빙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및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청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 세무서 - 해당직장 및 세무서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이하 “직인날인” 서류 동일 적용)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근로계약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견본주택 비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 견본주택 - 세무서 또는 홈택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3호(2020.09.29.)]에 따릅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8.)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연속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세대주가 아닌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2순위로 청약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24개월)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1순위 청약 가능.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 • 중복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를 무효처리함.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 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 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본 주택에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2순위로 청약 가능) • 상기 주택은 청약가점제 적용 아파트로서 일반공급 세대수에서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가점에 100%로 공급함. •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추첨제)이 분류됨.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구 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이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10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 해당지역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 / 1순위 기타지역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은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미만의 가입기간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하지 않은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됨.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입주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 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소유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Ⅳ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1.18.(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	2021.1.19.(화) 08:00~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은행창구(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1순위 기타지역	인천광역시 2년 미만 및 수도권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거주자	2021.1.20.(수) 08:00~17:30		
	2순위	수도권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거주자	2021.1.21.(목) 08:00~17:30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청약 시 유의사항.
- “해당지역(인천시)” 2년 이상 거주자는 “해당지역(인천시)”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는 청약 불가.(위반 시 부적격 처리)
- “해당지역(인천시)” 2년 미만, 수도권(서울시, 경기도)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접수.(해당지역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해당지역(인천시)” 1순위에서 청약 마감 시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 서류(계약 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특별공급신청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단독세대일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세대주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19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사실증명원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중 소득이 없는 자인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또는 자녀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비사업자의 경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산정기준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 (세대원 구성원 전부)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피부양 직계존속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이 분리된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자녀	•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 납부	본인	•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청약신청자의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 증빙서류 참조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사실증명원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중 소득이 없는 자인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청약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비사업자의 경우
일반공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 (세대원 구성원 전부)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피부양 직계존속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이 분리된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직계비속	•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도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8.)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구분	서류 제출 기간	서류 제출 방법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일반공급)	2021.2.1.(월) ~ 2021.2.7.(일) (7일간) / 10:00 ~ 17:00 ※우편접수 시 2021.2.5.(금)까지 도착분에 한함.	**드라이브 스루**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 견본주택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40-1 번지
		빠른 등기 우편 접수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우편 접수는 2021년 2월 5일(금) 도착분까지에 한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예비당첨자 추첨·계약안내

- 예비당첨자의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시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통지된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시에 불참 등으로 인해 발생된 책임은 예비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1.1.27.(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1.2.15.(월)~2021.2.21.(일) (10:00~17: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40-1 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1.27.(수) ~ 2021.2.5.(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1.27.(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

	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 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적용. [본 아파트('한화 포레나 인천연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제2호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으로 100% 가점제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본 아파트는 해당 사항 없음. (참고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신청자가 인천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 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Ⅵ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1.2.15.(월) ~ 2021.2.21.(일) (7일간 10:00~17:00)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 견본주택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40-1 번지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계약 체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 사항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영수증		
	○		인감증명서	본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아파트 계약용), 계약자의 `본인발급용`에 한함.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 홈페이지 양식 게재 또는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자금조달 관련 증빙자료	-	•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예 :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세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	자격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사항	○		계약자 인감증명서(위임용) 및 인감도장	-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계약자의 `본인발급용`에 한함.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대리인 중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위임장	-	
	○		대리인 신분증, 인장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자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함.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후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 또는 동점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후 순위의 예비입주자보다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201호 계약 시 "1010201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한은행	100-034-917187	아시아신탁(주)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이후 중

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 됨)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Ⅶ 추가 선택품목 계약

■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단위 : ㎡ / 원 / V.A.T 포함)

구분(전용면적)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 시
84A	26,000,000	2,600,000	23,400,000
84B	28,000,000	2,800,000	25,200,000
84C	23,000,000	2,300,000	20,700,000
84D	22,500,000	2,250,000	20,250,000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일부 실 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비확장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공 절차상의 이유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10.2.18.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등의 시공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하므로, 입주 후 개별적인 발코니 확장 등의 공사로 인한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입주자에게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배관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하드웨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색상이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샤시는 최종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주기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발코니 변화층의 경우 발코니 변화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조명 위치 및 수량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결로 발생시, 시공상 하자로 인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음.(단, 결로 발생이 고객의 귀책인 경우, 시공자의 책임은 면책)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확장을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본 아파트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추가 선택옵션1(가구류)

(단위 : ㎡ / 원 / V.A.T 포함)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 시			
	84A	84B	84C	84D	84A	84B	84C	84D	84A	84B	84C	84D
①현관중문	1,800,000				180,000				1,620,000			
②침실2 슬라이딩도어 붙박이장	1,700,000				170,000				1,530,000			
③침실3 슬라이딩도어 붙박이장	1,700,000				170,000				1,530,000			
④팬트리 및 드레스룸(시스템 가구)	1,800,000	2,300,000	1,500,000	2,000,000	180,000	230,000	150,000	200,000	1,620,000	2,070,000	1,350,000	1,800,000
전체 일괄 선택(①+②+③+④)	4,500,000	5,000,000	4,200,000	4,700,000	450,000	500,000	420,000	470,000	4,050,000	4,500,000	3,780,000	4,230,000

※ 추가 선택옵션1은 발코니 확장 적용 시 선택 가능한 옵션이며, 발코니 확장 미적용 세대는 선택이 불가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옵션1(가구류) 납부계좌

항목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옵션1	신한은행	100-034-949217	아시아신탁(주)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101동101호 홍길동 : 101101홍길동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옵션1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제출[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 선택옵션2(가전 및 기타)

(단위 : ㎡ / 원 / V.A.T 포함)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 시				
	84A	84B	84C	84D	84A	84B	84C	84D	84A	84B	84C	84D	
수입 주방가구 세트 (수입산 세라믹 타일 등)	15,000,000		15,500,000		1,500,000		1,550,000		13,500,000		13,950,000		수입+국내산주방 복합세트 세라믹상판&벽판넬 아이쿠벤 후드&전기쿡탑, 고급수전
바닥재 600각 포실린 타일	2,000,000				200,000				1,800,000				바닥타일마감 거실/주방/복도
3구 하이브리드 쿡탑	770,000				77,000				693,000				LG전자
공기청정 실내환기 시스템 (헤파필터, 내기순환모드 실내공기질센서)	500,000				50,000				450,000				

※ 추가 선택옵션2는 발코니 확장 적용 시 선택 가능한 옵션이며, 발코니 확장 미적용 세대는 선택이 불가 합니다.

■ 추가 선택옵션2(가전 및 기타)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추가 선택옵션2	우리은행	1005-404-085356	㈜한화건설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101동101호 홍길동 : 101101홍길동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옵션2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계약시 상기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유상옵션 선택품목 계약내용 및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함.
- 추가 선택옵션2 대금은 아파트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추가 선택옵션2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거실, 주방, 침실1, 2, 3, 알파룸 등)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옵션2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추가 선택옵션2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 선택옵션2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시 고지 된 것으로 함.(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단위세대 선택 품목 리스트(무상옵션)

주택형	제공 품목 (확장형)	세부내용
84A, 84B	알파룸 레이아웃	
전주택형	냉장고 배치 공간	

- 위 선택에 따라 창호, 가구, 등박스, 등기구, 각종 배선기구 등의 규모, 설치위치 및 수량이 상이하며,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위 선택품목은 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선택할 수 없음.

Ⅷ 기타

■ 마이너스 옵션금액

①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1)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거실, 주방/식당, 복도, 침실전체, 드레스룸, 파우더 룸 <엔지니어드스톤 및 타일-시멘트몰탈 포함> 현관 <타일-시멘트몰탈 포함> 욕실, 발코니/보조주방(세탁실), 실외기실, 대피공간	바닥 난방 욕실 및 발코니/보조주방 바닥 방수, 배수 슬리브, 우수, 배수, 선홈통
2) 벽,천장	<벽> 벽지(초배지포함) 및 벽체 마감, 거실 아트월, 주방 및 욕실 타일 마감 포함 <천장> 천장지(초배지 포함), 반자돌림(몰딩 포함), 단천장(우물천장,몰딩 등 마감일체 포함)	단열+석고보드 / 미장 / 콘크리트면 처리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스프링클러 배관 및 헤드, 소방 화재용 감지기 세대환기설비(장비, 덕트, 디퓨져)
3)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및 매입형 욕실 조명기구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및 매입 조명기구(욕실 제외)
4) 욕실	<위생기구> 비데, 양변기, 세면기, 욕조, 욕조틀, 수전류 등 <욕실 인테리어> 천장재(천장틀, 배기휀 포함), 샤워부스, 젠다이, 액세서리, 욕실장, 스위치, 콘센트 등 마감 일체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 배수 슬리브, 전기배관배선
5) 주방	주방가구 및 가전류 일체(주방상판,쿡탑, 전기오븐, 액세서리 일체 포함), 설비 수전류(수전 포함)	설비배관 전기 및 통신 배관/ 배선, 주방 배기덕트
6) 창호	문틀(본틀, 상부 덧판, 문선포함) 및 문짝(사춤 및 욕실문 하부씰, 손끼임방지, 하드웨어 포함)	목재 및 ABS 도어(공문틀 포함)의 가틀 및 사춤, PVC 내부 창호, 세대 현관 방화문, 디지털 도어락, 소방관련 방화문(대피공간)
7) 가구 및 기타사항	가구류 일체(신발장, 파우더장(상판 및 조명 포함)), 현관창고 도어 및 가구(시스템가구 포함), 드레스룸 도어 및 가구 (시스템가구 포함), 붙박이장, 주방가구(상판 및 수납장 일체) 수전류 일체(발코니, 세탁실) , 현관,드레스룸 중문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침실1) 대피공간 완강기 설치(3층~10층)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함.

②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주택형(㎡)	84A	84B	84C	84D
금액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③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 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 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및 별도계약 품목 시공 신청이 불가하며, 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에는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오수드레인 설치가 불가하므로 물 사용이 제한되며,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수량/사양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안,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강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정 ₩15,000,000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만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 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가변식의 칸막이 제거(변경)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 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처리가 삭제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됨.

IX 유의사항

■ 일반 공통

- 당 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변경)승인(2020-도시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을 득한 사업으로 관계 법령 등이 인정하는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음.
- 본 아파트는 해당 지방교육청이나 인허가청의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음.
- 2009.4.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 면적(㎡) x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 3.3058]
- 면적표현은 소수점 넷째 자리 제곱미터(㎡)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 면적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함.
- 주택 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이에 따라 면적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 등의 합계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은 해당 세대 또는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수별 형태 및 면적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주택형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같은 주택형일지라도 세대별 등기면적은 상이할 수 있음.(이에 따른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은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단위세대 내부의 불법 구조 변경 및 해당 세대 공용부의 불법 전용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 공사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되며,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 될 수 있음.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람.
- 이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용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용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동호별 등의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이의없이 동의함.
- 견본주택에는 84B, 84D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다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음.
-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법절차를 통해 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써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 및 침실 선택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사업주체의 분양일정 및 운영사정에 따라서 입주예정자들의 사전동의 또는 안내 없이 철거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향후 주변 고층건물 등의 건설 및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계약 체결 후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시행사, 위탁사,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없음.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는 향후 사업시행자 및 인허가 관청의 일정에 따라 각 도로의 개발 및 개통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며 지연, 변경(도로폭,위치,레벨 등)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와 도시계획도로의 개통시기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관청 문의바람.
- 사업승인 및 본 공사 진행 후 준공시까지 설계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본 공사시 견본주택에 시공된 무늬, 형태, 색상, 두께와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층별 라인별로 외부 마감재료 및 외부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의 경우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문상의 문구 중 사업주체의 고의가 아닌 착오,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일부 표기가 잘못될 수 있으므로,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재확인 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특히, 홍보물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변경승인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조경석 쌓기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위치·재질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대지면적은 지구단위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결과에 의한 지적분할측량결과로 산출된 것이며, 준공 후 시행하는 지적확정측량시 면적이 감소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금액정산은 없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배분된 대지지분과 별도로 단지 내 일부 토지는 건축심의 및 주택사업승인 인허가 결과에 따른 조건 및 제한 사항에 따라 실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심의사항 이행 또는 주택사업승인 인허가 결과 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등이 수반될 수 있으며, 해당 변경 등이 관련 법령에 의거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할 경우 입주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성능등급표시 의무사항에 의하여 모집공고문에 해당 내용을 표시하며 각종 인증사항의 최종 결과는 유효 인증 범위 내에서 그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조권 및 소음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견본주택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를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 일조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와 관련하여 시행사, 위탁사 및 시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문 이후 단지 주변 여건의 변화 등(인접 대지 건물의 신축 및 개축, 도시계획도로의 신설 및 개선, 고속도로의 확장, 하천의 정비 등)에 따른 일조권 및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 추가 사유등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시행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 실 대지의 측량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견본주택, 건축물의 배치 구조,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로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차단기 및 문주, 방음벽, 드라이에어리어(DA),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차량출입시설의 경우「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조례」별표 시공기준 및 건축허가 도면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됨.
- 보도 설치 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 기타 관련법률 및 규정,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진출입 등을 위해 조성되는 전용 및 완화차로 확보구간의 경우 기존 도로와 연계된 도로 구배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설되는 도로 및 보도, 교통안전시설(교통안전표지, 노면표지 등), 보도 포장 재질 및 패턴, 기타 도로시설물 등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명기구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위해 다수 주민의 이용에 편리하고 청소차량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종량제 기기 및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주변에 악취 및 수거 과정에서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청소차량 진입 및 수집 운반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 용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재활용품 배출량 증가 시 분리 수거대가 추가 설치될 수 있음.
-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주거동 지하에 단지 오수처리를 위한 정화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시설의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작업시 소음 및 냄새 등으로 인접세대의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가 제2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교통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 및 방진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나, 일부 세대는 소음·진동 및 전조등 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향후 제2경인고속도로 확장 계획에 따라 교통소음 저감 대책(방음벽, 저소음포장 등)에 대하여는, 저감방안의 위치 등 변경, 시공주체, 시공시기, 유지관리방안 등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의 체육시설은 입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입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설치되며,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은 입주민 공동 부담임.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품창고,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배수설비,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시설물의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내에는「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영유아보육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연수구와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의사표시 예정임)
-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의 옥상 또는 외부로 돌출된 배기펜 또는 태양광 집열판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소음 및 미관상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 외부에 돌출되는 태양광 집열판, 급·배기시설, 실외기 등의 시설이 설치될 예정임.
-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 준수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내(복도, 계단실 등 공용조명) 및 실외(보안등, 산책로 조명, 야간경관조명 등)에 태양광·LED 조명이 설치될 예정임.
- 본 아파트 입주민 초등학생은 해당 통학구역인 선학초등학교에 배치가 가능함.
- 본 아파트에서 선학초등학교까지 안전한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교육청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입주민 중학생, 고등학생은 해당 학교군 내 적정 배치할 예정임.
- 본 아파트 학생배치계획은 사업계획 변경, 인근 개발사업 추이 및 급당 인원 하향 조정 등의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 등에 따라 교육청과의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하나의 단지로 복리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임.
- 본 아파트 인근에 변전소, 송전탑, 쓰레기소각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주변소음 및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입주자 불편과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음방지 조치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공되나, 일부 세대별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일부 도로 및 저층세대는 열기 및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설계관련 및 기타유의사항[아래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변경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부여건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쓰레기분리수거장 및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도로는 보·차도 혼합 블록으로 설치되고 지상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잔디블럭 또는 이와 유사한 자재로 설치될 예정이며 차량 운행 및 보행시 소음 및 이용의 불편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북측 경계는 무주골공원(가칭)과 연결된 보행로가 설치될 예정이며, 공원 계획의 변경에 따른 보행 환경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변경 등에 대한 책임은 공원 운영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비상차로포함)의 차량통행으로 인해 저층부세대의 주거환경에 일부 간섭이 생길 수 있으며, 지하3층의 경우 택배 및 통학차량의 출입 등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내 차량통행로 및 차단기 계획은 이용상의 편의 개선을 위해 해당 선형 및 설치위치, 개수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동에 대한 주거환경간섭의 정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는 대지레벨차이로 인한 보행자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하여 옥외 계단 및 승강기가 설치되며 각 시설별 세부계획 등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유지관리 등의 책임은 해당 입주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 또는 관리사무소에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주거동의 설비공간과 연결된 각종 배선, 배관 및 조명, 소방설비, 환기설비 등이 노출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통행 가능한 높이를 감안하여 설치되므로 해당 높이 이상의 차량이 출입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부대복리시설 및 주택의 환기 및 소방기능을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면 및 필로티 등에 설치되며 일부 인접세대는 해당 시설 작동시 소음 및 냄새 등의 침해 및 세대 환기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및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계획이 상이 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계획은 동별로 균등 분배되지 않아 일부 동은 이용상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동 필로티의 상부 캐노피 설치 위치(개수)는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 재질,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 및 시공성 개선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경우 임의로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식재 등의 위치는 입체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 유무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식재 대상,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의 조경석 쌓기, 옹벽 등의 위치 및 형태 디자인은 준공 접수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인접 거주군의 민원 및 기타 사유로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및 디자인은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각 부분의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 단지 출입구의 문주 등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단지경계 및 내부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결 될 수 있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위치 및 층에 따라 입면재료가 상이하니 계약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충분히 확인 하시기 바람.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각 코어별 엘리베이터의 개수, 속도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코어별 계단실의 창호는 해당 층의 세대와 인접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개폐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시공됨.
- 각 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의 창호는 관련 법령이 허용한 범위에서 개폐 가능한 창호가 설치되며 피난 시 제연을 위하여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 아파트 1층 및 지하층 로비 평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코어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 마감사양 등은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실제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 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 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며, 안전매트 구간은 준공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람.
- 주,부출입구의 경비실, 문주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 입체적 조화를 위하여 위치 및 형태, 재질,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와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등의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평면 계획상 일부 세대 침실 등의 공간은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하여 운행 중 진동/소음이 세대 내부로 전해질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본 단지 지상과 지하 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지상과 지하로 나누어 배치되어 있으며, 지상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주차면과 함께 배치되어 있으며, 지하층 주차동선을 통해 출입할 수 있음.(근린생활시설 주차동선과의 혼재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3층 주차출입구는 높이 2.7M 이하의 차량(관련 법령에 따라 택배차량 포함)이 출입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내부 주차장의 차로 최소 폭은 6M이며, 특수 대형화물차, 사다리차 등의 진입은 불가하므로 해당 차량은 단지 주출입구 비상차량 동선 또는 부출입구 비상차량 동선을 통하여 단지로 진입하여야 함.
- 본 단지 주차대수는 전체 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와 지상주차장(근생합산)의 합산 대수로 각 동 별 주차 대수를 인정하지 않음.
- 본 단지의 지상주차장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입주자와 상가입주자 및 방문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각 동별, 세대별로 구획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없음.
 (지상부분의 상가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상가용도의 면적에서 산출한 법적 주차대수(3대)로 계획되었음)
- 각 동 주차대수를 임의로 산정할 수 없으며 실제 이용에 있어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 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따라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지상주차장은 장애인주차, 경형주차, 전기자동차충전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 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 및 대수는 변경 될 수 있음.(주차계획상 동별로 균등 분배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은 각 층별로 주거동 코어와 인접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각 코어별 배치 대수는 코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지하, 지상주차장의 주차구획 규격은 주차장법에 의한 법적기준에 의한 규격이며, 위치에 따라 기둥, 벽체 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102동 일부 코어는 지하3층 주차장과 수평 연결된 지상 주차장을 통하여 연결되며, 지하2층 주차장과는 직접 연결되므로 이를 인지하시기 바람.
- 본 단지는 향후 지하층 배수기능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수펌프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등은 공용 전기료로 부과됨.
- 무인택배시스템은 경비실 건물에 단지 내 총 2개소 설치 예정이며, 이용을 위한 동선은 각 주거동 위치에 따라 다르거나 길어질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출입구에 설치된 우편물수취함의 위치, 개소,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단차이 및 주변 레벨에 따라 조경석 쌓기 및 옹벽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 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1층,지하1층 필로티의 보행자 진출입로는 동 출입구 형태 및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및 각종 시설물 (DA,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 보관소등) 및 마감재등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모형, CG에 표현된 주변현황(도로 및 주변건물 등)은 이미지로서,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모형에 표현된 단지경계선 외부공간[녹지, 주변도로]의 형태 및 레벨계획은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으로 달라 질 수 있음.
- 입주 이후 단지 주변의 도로에 의해 소음 및 분진, 진동, 교통체증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이후 향, 조망,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 공사(ex.태양광전지판)설비의 구조 및 형태는 미관, 효율성을 고려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옥탑부위에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발전기 가동 시 발전기 드라이에어리어(D/A)에 의한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시 안전매트 구간 계획에 의하여 조경식재의 종류, 위치, 보도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및 대지의 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하며 주차는 단지 내에 별도 구획(근생 주변 지상주차장내)되며, 이에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건축 및 설비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지 주거여건도 함께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점시설에 따라 소음, 냄새, 빛공해 등으로 인접 주거동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근생의 형태(높이 및 크기, 면적등)는 고시된 도로선형에 준하여 설계된 것으로, 추후 근생형태 및 주변현황은 분양자료와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세대내부 칸막이벽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있어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건식고정 벽체임.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을 위한 피트공간으로 인해 실내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에 수납공간이 협소할수 있으며 부분 수정될 수 있음. 온수분배기 설치위치의 가구 뒷판과 하부 바닥마감은 시공되지 않음.
- 수분양자의 계약세대 상하좌우 세대중 마이너스 옵션 선택 세대가 있을수 있으며, 이 경우 마이너스 옵션세대가 없을 경우와 다른 단열, 마감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면적, 마감 방법의 차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차관제시스템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한화건설 모바일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됨. 해당서비스는 준공 3년 이후 홈넷 및 무인경비공사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통하여 유료로 전환될 수 있으며, 서비스 적용과 연장을 결정할 수 있음.(한화건설 전용 어플리케이션 미적용 시 홈넷 어플리케이션을 제공 받을 수 있음)
- 서비스 업데이트와 서비스 제공(외부 제어 및 연동)을 위하여, 단지별 선별 적용되는 시스템들(예:원패스, 무인택배, 홈넷 무인경비설비 등)의 전문 장비는 인터넷 회선이 연결되어야 함. 해당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전용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중 일부는 기간사업자의 연동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으며, 기간사업자(통신사, 포털사, 가전사 등)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변경(유료/무료/서비스 내용) 될 수 있음.

■ 세대/디자인

-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시 동급의 제품으로 시공됨.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몰딩, 벽지, 타일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가스배관, 환기배관,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홍보물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의 크기, 위치, 모양, 구조형식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음.
- 단위세대에는 별도의 대피공간이 설치되며 측세대, 중간세대, 해당 층, 위치별로 내부 치수는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외부 창호 및 출입문 등 일부 변경 되어질 수 있음.
- 단위세대에는 별도의 실외기실이 있으며, 시공시 그릴창 또는 난간대 및 출입문의 개폐방향 등 일부 변경 되어질 수 있음.
-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타일,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다음 각목의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가.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나.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다.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라.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마. 신발장 및 붙박이장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도배지, 천장지, 강마루 등)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 난방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난방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온수분배기 가림판 설치위치는 본공사 시공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씽크대 하부 및 가구 설치로 가려지는 부분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본 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임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음. 주방가구의 상부장이 가스미터기 설치위치와 겹치는 일부 타입의 경우 상부장의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단, 전기쿡탑을 유상옵션으로 선택할 경우 가스배관이 주방으로 인입되지 않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동일한 컨셉이더라도(미건립타입)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
- 주방가구의 구성 및 제공품은 타입별 주방크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욕실 수건걸이 등 액세서리의 크기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욕실 및 발코니 배수구 및 수전의 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형태변경이 있을 수 있음.
- 84A, 84B Type 발코니2(주방발코니)에는 세탁 배수를 위한 배수 입상관(고층부 1개소 / 저층부 2개소)이 설치됨.
- 견본주택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으로 문틀이 미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시 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음. 또한 본 공사시 방화문 프레임 두께는 달라 질 수 있음.
- 세대복도 및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욕실 등 다운부위는 실시공시 바닥 구배 등으로 인해 위치별로 단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견본주택과 단 높이 차이가 있으며 슬리퍼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하며, 철거 전에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입주자 선택에 의해 발코니 확장, 비확장에 따라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개별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는 중도금대출 및 분양 옵션 잔금을 완납 후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실 공사시 사용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됨.
- 동일 평면 타입이라도 해당 층,호(측세대 여부 등)에 따라 외부창호, 단열재 시공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건물외부, 엘리베이터 홀, 복도, 주현관, 지하주차장, 지하층 홀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실외기실 등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발코니에 설치되는 바닥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수전이 없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높이는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마감재 내역은 팜플렛 및 마감자재리스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세대의 발코니,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D는 옥상 배수 등 공용 기능을 위한 설비가 함께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진동 등이 내부로 전달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기, 스위치, 통합 일괄소등 스위치, 온도조절기, 보일러, 전열교환기, 홈네트워크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공급세대의 마감재 리스트 중 미표기 사항, 외부 환경디자인 등 카다로그에 미표기 사항은 사업승인변경최종도서에 따라 시공함.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를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감지기, 유도등은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시 변경, 미설치, 추가설치 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발코니, 욕실, 현관 등 방수 및 재료분리로 인하여 해당부위의 바닥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슬리퍼 등을 사용할 경우 발이 걸릴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 시 마감재 설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 창호 설치로 인하여 미관이(방충망 색상, 돌출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으며, 방충망 돌출로 인해 공간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
- 주방 및 거실의 조명개수와 사이즈는 타입 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 높이는 천장 설비에 따라 실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가구 내부의 액세서리는 타입 별로 사이즈 및 제공여부가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또는 단창 등으로 설치되나, 향후 창호사양 (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유리 등) 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규격(용량)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 할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거울은 세제 등 생활용품(알카리성 화학성분)의 사용상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변색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수량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계실 없는 승강기 설치에 따른 최상층의 승강기 버튼 하부에 제어반이 설치되며, 기준층 승강기 버튼박스와 디자인이 상이함.
- 비확장형 선택시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없음.
- 구조변경이 따른 옵션 선택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등의 타입, 배치 및 설치수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거실, 침실1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음.
- 전기쿡탑 옵션 선택시, 현관측 일괄소등 스위치 및 거실 월패드에 가스차단 기능이 전기차단기능으로 변경됨.
- 주방 상부장의 스마트 거치대, 조명의 전원 연결 및 추후 수리&점검을 위하여 상부장 타공 등의 형태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발코니에 배수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은 외부로 노출되어 세대 내부에서 보일 수 있으며, 배수 기능 으로 인한 소음 등이 세대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튼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 동일한 평면이라도 각 동 라인별로 실내폭 치수가 상이하니 동평면도를 충분히 확인하고 인지하여주시기 바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또한 84D타입과 같은 건식부부욕실 세면대 상부 천정에는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됨.
- 단위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최종 사업승인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실외기실, 앞발코니, 보조주방 등)의 내부 폭은 같은 타입이더라도, 중간세대 + 측세대 + 꺾인세대등의 동 조합에 따라 안목치수가 일부 법적인 오차내에서 달라질 수 있음.
- 당 현장의 단위세대(측벽 일부세대를 제외) 욕실은 골조위 지정타일 방식으로 시공되며(조적+골조위 타일 접합 방식이 아님), 층차이가 발생하는 상부층 일부세대는 건식공법으로 시공되어질 예정임.
- 당 현장은 거실 아트월, 주방 벽 및 욕실 벽에 타일로 마감되며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주방가구에 설치된 휴대폰 무선충전 콘센트는 본 공사시 동급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전기분전반은 관련 기준에 따라 노출된 침실 벽 등에 설치되므로(향후 복도 등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통신 세대단자함이 펜트리 벽 등에 설치되므로(향후 침실 등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작동 점검 시 및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장비 설치 시 수납물을 꺼내고 점검 및 설치하여야 함.
- 스마트폰 원패스 기능 적용시 휴대폰 및 사용 OS 버전 등 아래의 내용에 따라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또한, 아래의 기능이 휴대폰 내에서 활성화 시에만 기능이 구현됨.
 - GPS, Bluetooth, 위치권한, 원패스 어플리케이션 활성화 등이 'ON'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휴대폰 배터리 사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최소 요구사양 : Bluetooth Version 4.0 이상 / Android : v4.3 이상 / IOS : v13.0 이상 / Galaxy s6 이상 및 Apple I-phone 6s 이상.
 - 해당 어플은 최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단위세대는 측세대, 중간세대, 층, 위치에 따라 벽체 공유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의 안목치수는 세대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이로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현관중문의 사양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법 제54조에 의거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안내할 예정임.
- 단위세대 대피공간은 10층 이하까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완강기가 설치되므로 해당 창호는 밖으로 열리는 타입으로, 11층 이상부터 최상층까지는 안으로 열리는 타입으로 설치됨.
- 단위세대 대피공간 창호는 열리는 방향에 따라 해당 창호의 프레임 두께 및 손잡이 등 부속품이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제공/전시품목

-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 외부창호 및 각종 문은 본 공사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교체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생활가구류(거실장, 침대, 테이블, 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벽체장식판넬 등), 전시조명등은 견본주택 연출을 위한 전시품목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 가구 도어에 부착된 글씨 안내 문구는 견본주택 연출용으로 본 공사시 부착되지 않음.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품은 견본주택용의 냉난방겸용 제품이며, 추후 본공사 설치 예정 모델과 상이함.

■ 환경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등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과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하여 각 세대의 조망과 향, 일조량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이를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외부 형태 (도로, 녹지, 주변상황 등)은 실시계획인가 변경,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으로 준공시 모형, CG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코너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제연급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동, 주차램프, 문주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 각동의 지하층에는 빗물저류조,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발생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천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 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보관소(쓰레기분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설치 인근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 해당시설의 위치 및 내부 계획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는 세대 화장실 등의 환기구가 설치되며 최상층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지붕, 외벽 등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그늘, 빛의 산란, 전자파 등으로 인한 영향 등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에 위치한 일부 동은 차량 및 보행자의 단지 출입에 의한 소음, 전조등에 의한 빛간섭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문주에 근접한 동은 거실, 침실, 주방, 다용도실 등의 창호에서 문주로 인한 조망, 채광, 소음 등이 불리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 및 사인물 등이 세대 외벽에 일부 설치되며, 인접 세대는 해당 시설물의 야간 조명으로 인한 빛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은 지하2,3층에 설치되며, 주요 실은 환기창 및 채광창이 외기에 면해 있으나, 지상층에 비해 일조 및 채광, 통풍 등이 불리할 수 있음.
- 101동 하부 지하2층 및 지하3층에는 휘트니스, G.X, 골프연습장 등이 계획되어 입주민의 해당 시설의 이용에 따른 일부 인접세대에서는 소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은 지상1층에 위치하여 저층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경로당은 지상1층에 위치하여 저층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작은도서관은 지하1층에 위치하여 저층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101,102,103,104동의 하부 도로변에 위치한 근린생활 시설로 인한 소음 및 냄새 등으로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102,103동의 지하에 단지 오수처리를 위한 정화조가 설치될 예정이며, 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시 소음 및 냄새 등으로 인접세대의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는 향후 사업시행자 및 인허가 관청의 일정에 따라 각 도로의 개발 및 개통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며 지연, 변경(도로폭, 위치, 레벨 등) 또는 취소 될 수 있음.
- 모형에 표현된 단지경계선 외부 공간주변도로(도로, 보행자)의 형태 및 레벨계획은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으로 달라 질 수 있으며, 조경 및 토목 옹벽의 "형태 및 색상, 크기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의 지붕 층에 설치되는 구조물(태양광 발전시설 포함)에 의해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일부 인접 고층세대는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상부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인접한 101,102,103동은 소음 및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단지 내 동별, 세대별 일조 수인량의 차이가 있으며, 일부세대는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총 일조시간의 합이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거나,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 내 비치된 일조보고서(104,106,108,109동)를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일조와 관련하여 시행사, 위탁사 및 시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 본 단지 남측에는 윤성아파트가 위치하여 있고, 인접한 101,103동은 이로 인한 소음 및 조망권침해,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북측에 무주골공원(가칭)이 건립될 예정이며, 주변의 건축물 및 전, 답 등에도 추후 신축, 증축 등의 건축행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추후 환경권(일조권, 조망권 등)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환경디자인

- 단지 내 주거동, 부대복리시설, 동현관, 지하출입구, 문주, 조경, 각종 지상 시설물(환기구, 난간, 쓰레기보관소 등)등 모든 시공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형태 및 크기, 설치 위치, 수량 등은 그 디자인 의도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고,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 될 경우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디자인 및 사용성, 안전성 개선 등의 각종 사유로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시공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의 색채계획은 추후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벽마감은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함.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 및 사인물 등이 세대 외벽에 일부 설치되며, 인접 세대는 해당 시설물의 야간 조명으로 인한 빛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음.
- 주동의 입면 줄눈계획은 추후 인허가 및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3개층이하)는 석재, 뿜칠 및 수성페인트 등으로 일부 구분되어 시공될 예정이며, 향후 관련법규 변동 및 특화디자인 컨셉에 따라 일부 재질 및 적용부위,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의 경관, 색채 디자인은 인천광역시 경관심의를 거쳐 계획되었으며, 향후 필요시 경관재심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식재, 형태, 면적은 인허가 및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이후 조경관련 유지관리공사의 시행주체는 입주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 또는 관리사무소에 있으며 인수인계시 드리는 유지관리계획서 및 지침서를 참고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공간 내 실면적의 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입주시 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창호 및 문의 위치, 개수, 형태, 재질, 색상 등 세부 사항들은 향후 성능개선 및 이용성 향상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마감재 및 그래픽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음.
-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 위치, 크기,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향후 현장의 여건 및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또는 입주예정자 의사 결과에 따라 그 운영주체 및 국공립 적용 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본 단지의 체육시설은 실외 주민운동시설 2개소와 실내 운동시설(휘트니스, G.X 등)로 구분되어 설치될 예정으로, 향후 세부 설치 시설물의 수량과 형상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학교관련 유의사항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은 인천광역시교육청(032-420-6526~7)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학군 내 지망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입학)하고 있고 교육정책 및 여건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으며,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의 배정(진학)이 어려울 수 있음.
- 초등학교는 선학초등학교에 배치예정입니다.
- 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주변 환경

- 인천시 및 인허가 관청의 도시계획시설(주변 도로공사)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취소·변경·축소·지연될 수 있음(필히 해당 개발사업주체에 문의,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인근에 제2경인고속도로가 접하여 환경피해(소음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 및 인천시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 인근 고속도로는 장래에 확장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확장공사 후 소음도가 확장공사 착수시점의 실측소음도(도로관리기관이 측정)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음피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해당 소음 저감의 의무는 그 소음유발주체인 해당 도로기관에 있음.
- 본 단지는 북측의 제2경인고속도로에 의한 소음방지를 위해 주택법 42조에 따라 북측 대지경계선에 방음벽이 추후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 통풍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의 북서측 제2경인고속도로 건너편에 문학경기장이 있음을 미리 확인하여야 함. 추후 이로 인한 소음, 조망권, 환경권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 북측의 무주골공원(가칭), 북서측의 문학경기장, 서측의 선학경기장 등의 운영 등에 따른 주,야간 소음, 조망권,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취소·변경·축소·지연될 수 있음.(필히 해당 개발사업주체에 문의,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 관련 모형 및 자료에 표기된 도로 폭과 현황은 교통영향평가심의,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주택사업승인결과에 따른 것이며 실제 현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현장을 답사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외부 도로에 설치되는 교통시설물 및 차로와 차선의 운영방법 및 차량의 동선방향 등은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분양 및 거래(입주)시 안전관련 정보 제공

분야	법적의무사항	추가 및 보완 제공 내용
화재	스프링클러 설치	1.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계단실, 일부 옥탑 등 제외) 2.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인덕션 전용 누전차단기 설치(옵션 선택 시)
풍수해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지하주차장 집수정에 배수펌프
지진	내진설계	건축기준(2009.국토해양부 고시)
방범	CCTV 설치	1.아파트 각동 1층,2층 및 최상층 동체 감지기 설치 2.지하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1층홀에 카메라 설치
장애인 안전	장애인 이동통로	출입구 경사로, 점자블럭
어린이 안전	놀이터 안전 등급	안전인증검사에 통과된 놀이시설물 설치 및 어린이낙하에 안전한 두께의 고무집포장재 사용
노약자 안전	보도블럭 미끄럼방지	안전한 보행성 확보를 위한 표면가공을 통한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가진 포장재 사용

■ 홈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설치 항목

구분	기준	설치항목(1)	설치항목(2)	비 고
항 목	1	배선	주동현관 통제기	
	2	예비배관	원격검침 전송장치	
	3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침입감지기	
	4	통신배관실(TPS)	차량통제기	
	5	단지서버실	일괄소등제어	
	6	폐쇄회로TV장비	디지털도어록	
	7	가스밸브 제어기	엘리베이터호출 연동제어	
	8	조명 제어기	현관도어카메라	
	9	난방 제어기	무인택배시스템	
	10	현관방범 감지기		

X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 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거 사용검사 전에 계약자가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행하며 그 일자는 추후 통보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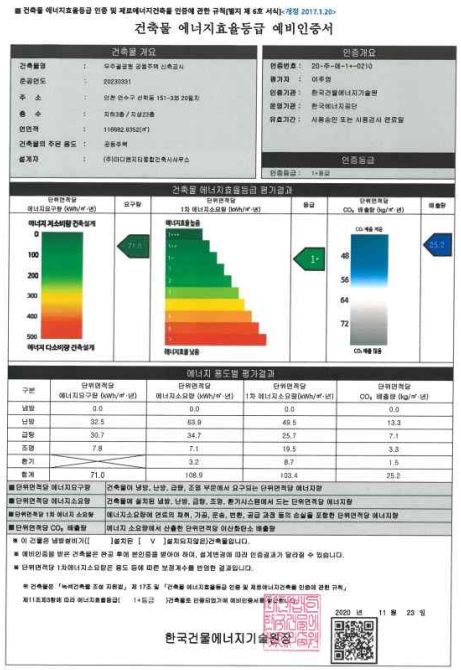
구 분	감 리 회 사	감리금액(원, VAT포함)	비 고
건 축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2,570,983,8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음.
전 기	㈜서전종합전기	414,873,004원	
통신 / 소방	㈜건축사사무소 테크뱅크	660,000,000원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적용)

구 분	적 용 여 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실치개수(필요시) 등
고효율 기자재	적용	급수펌프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대기전력차단 장치	적용	거실/침실/주방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각 1개소에 설치(세대)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설치(세대)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단위세대 일부, 공용부 일부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 : 자동점멸스위치 설치(공용부)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각 실 :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절수형 설비 설치
지열 OR 태양광 시스템	적용	경로당, 어린이집, 공용부 전력 적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본 단지는「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7조 및「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인증에 관한 규칙」의 냉방 및 난방면적 500㎡ 이상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인증서를 표시함.	본 단지는「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6조 및「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기준」제7조에 의거하여 10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인증서를 표시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무주골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 20-주-00-1+-0210
준공연도	: 20230331	평가자	: 이주영
주 소	: 인천 연수구 선학동 151-3외 20필지	인증기관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층 수	: 지하3층 / 지상23층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면 면 적	: 116992.6352㎡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 계 자	: (주)마디엠지티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32.5	69.9	69.5	13.3
급탕	30.7	34.7	25.7	7.1
조명	7.8	7.1	19.5	3.3
환기		3.2	8.7	1.5
합계	71.0	108.9	123.4	25.2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의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설치된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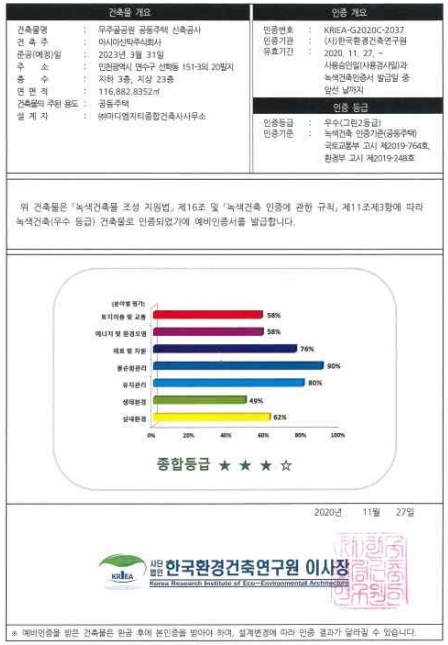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 년 11 월 23 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무주골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 KRIEA-G2020C-2037
건 축 주	: 이시아산탁주식회사	인증기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준공(예정)일	: 2023년 3월 31일	유효기간	: 2020. 11. 27.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일선 날까지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51-3외 20필지		
층 수	: 지하 3층, 지상 23층		
면 면 적	: 116,992.6352㎡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 계 자	: (주)마디엠지티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우수(그린2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64호, 환경부 고시 제2019-248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 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 ★ ☆

2020년 11월 27일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 평가서
본 단지는「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 58조에 의거하여 500세대 이상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성능등급인증서를 표시함.	본 단지는「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의거하여 500세대 이상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성능평가서를 표시함.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무주골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신 청 자 : 아시아신탁주식회사
3.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51-3외 20필지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표토의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정도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절약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침 정비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자존율 보호를 위한 특화품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장수명형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자활환기(자기)의 모니터링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우수재이수 이용	★★★★
18. 필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준비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인증주조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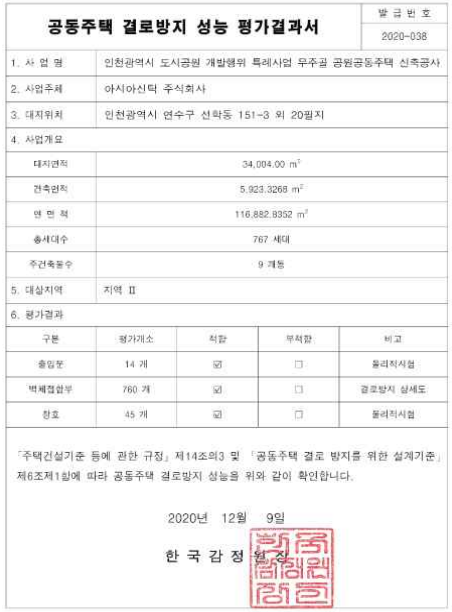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 평가결과서

발 급 번 호 2020-038

1. 사 업 명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무주골 공원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3.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51-3 외 20필지
4. 사업개요	
대지면적	34,004.00 ㎡
건축면적	5,923.3268 ㎡
연 면 적	116,882.8352 ㎡
총세대수	767 세대
주건축물수	9 개동
5. 대상지역	지역 II
6. 평가결과	

구분	평가개소	적합	부적합	비고
출입문	14 개	☑	☐	돌려적시설
벽체접합부	760 개	☑	☐	결로방지 상세도
창호	45 개	☑	☐	돌려적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및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0년 12월 9일

한 국 감 정 원 장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보증 내용**

보 증 기 간	보 증 금 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252,658,280,000원	제 01282020-101-00145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P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 행 위 탁 사	시 행 수 탁 사	시 공 사
상 호	무주골파크 주식회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화건설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6(역삼동, 태왕빌딩 10층)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81 (대야동 모비딕빌딩 8층)
법인등록번호	110111-6870079	110111-3543801	110111-2558405

▶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1.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위탁자인 무주골파크 주식회사와 수탁자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무주골파크 주식회사가 공급하는 건으로서, 아시아신탁은 관리형 토지신탁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위탁자인 무주골파크 주식회사와 수분양자(매수인)는 인지하고 동의한다.
2.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위탁자 무주골파크 주식회사으로부터 토지를 수탁받아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책임, 하자담보책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무주골파크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수분양자(매수인)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게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손해 및 비용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3. 본 사업 관련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수분양자(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시점"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위탁자 무주골파크 주식회사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매수인)는 일체 이의없이 동의한다.
4. 위 제1항 내지 제3항 등에 따라, 수분양자(매수인)은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일체 하자보수(사용승인전 하자 포함)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위탁자인 무주골파크 주식회사 또는 시공사인 (주)한화건설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5.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6.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수분양자(매수인)는 반드시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7. 위탁자 무주골파크 주식회사 또는 수분양자(매수인)는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시 해당 기한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8.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위탁자 무주골파크 주식회사와 수분양자(매수인)간에 또는 시공사 (주)한화건설과 수분양자(매수인)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대해서 일체 효력이 없다.
9.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 홈페이지(사이버 견본주택) :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 (http://hanwha.forena.co.kr/yeonsu)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0-1번지(TEL. 1644-9099)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